

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

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제12조제5항에 따라 임금을 건설근로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.

1. 제2항에 따른 임금의 내역에 제12조제5항에 따른 현금 지급분임을 지급 대상 건설근로자별로 명시하고, 지급대상 건설근로자 본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2. 제3항의 임금의 내역 중 일반계좌 번호는 지급대상 건설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일반계좌 번호로 하여야 한다.

제12조제5항 중 “건설근로자가 지정한 다른 사람의 일반계좌로 지급(제10조 제3항에 따라 일반계좌를 등록할 때 다른 사람의 일반계좌를 등록하여 지급하는 경우를 말한다)하거나”를 “건설근로자에게”로 한다.

제12조제6항 중 “다른 사람의 일반계좌”를 “건설근로자에게 직접 현금으”로,

“동의 및”을 “현금수령”으로 한다.

부 칙 <제2024-318호, 2024.06.19.>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공사대금의 청구) ① ~ ⑤ (생략) <u><신설></u></p>	<p>제7조(공사대금의 청구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⑥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제12조제5항에 따라 임금을 건설근로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.</u></p> <p>1. <u>제2항에 따른 임금의 내역에 제12조제5항에 따른 현금 지급분임을 지급대상 건설근로자로 명시하고, 지급대상 건설근로자 본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</u></p> <p>2. <u>제3항의 임금의 내역 중 일반계좌 번호는 지급대상 건설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일반계좌 번호로 하여야 한다.</u></p>
<p>제12조(공사대금의 지급) ① ~ ④ (생략)</p> <p>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건설근로자가 일반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개설된 일반계좌를 이용</p>	<p>제12조(공사대금의 지급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----- ----- -----</p>

할 수 없어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임금을 건설근로자가 지정한 다른 사람의 일반계좌로 지급(제10조제3항에 따라 일반계좌를 등록할 때 다른 사람의 일반계좌를 등록하여 지급하는 경우를 말한다)하거나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.

⑥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5항에 따라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제7조제3항의 임금 내역에 다른 사람의 일반계좌로 임금을 지급한 사실과 그 사유를 명시하고, 건설근로자 본인의 동의 및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.

⑦·⑧ (생략)

----- 건설근로자에
계 -----

-----.

⑥ -----

----- 건설근로자에게 직
접 현금으-----

----- 현금수령 -----
-----.

⑦·⑧ (현행과 같음)